

제2부 심의 · 의결 현황

제1장 심의개요

제2장 결정유형별 분석

제3장 매체유형별 분석

제4장 위반유형별 분석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기사심의는 선거기사에 대한 자체심의와 후보자(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시정요구 심의, 반론보도청구 회부심의, 그리고 재심청구심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자체심의의 경우, 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실무팀에서 대상매체(중앙일간지 26종, 지역일간지 82종, 종합주간지 22종, 지역주간지 254종, 월간지 12종, 뉴스통신 2종 등 398종)의 선거관련 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낸 후 이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하 선심위)는 특정 후보 및 특정 정당을 과다하게 부각시켜 공정성 및 형평성을 크게 위반한 기사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의도성이 있고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거나 동일 유형의 위반사례가 잦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특정 후보 및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기사를 작성해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기사크기가 비교적 작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도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주의 결정을 내렸다.

선심위는 이와 관련, 선거 실시 120일 전인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5월 9일까지 모두 16차례 회의를 개최, 자체심의한 89건에 대해 주의 및 경고,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및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89건 중 경고문 게재가 44건(49.4%)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가 38건(42.7%), 주의가 7건(7.9%)이었다. 이 같은 위반건수는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의 69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특히 제재 강도가 센 경고문 게재 결정 44건의 경우 17대 총선이 5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경고문 게재와 경고, 주의 결정을 받은 89건의 기사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51건(57.3%),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5건(5.6%), 광고제한 위반 8건(9.0%), 외부기고 위반 25건(28.1%)으로 나타났다.

각 매체별 위반현황을 보면, 중앙일간지의 경우 3개 매체에서 3건의 위반사례가 있었는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건, 외부기고 위반이 1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일간지는 39건의 위반건수를 나타냈는데, 외부기고 위반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4건, 광고제한 위반 5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주간지는 25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8건, 외부기고 위반 4건, 광고제한 2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1건으로 나타났다.

일간지의 경우 6건으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5건, 광고제한 위반이 1건이었다.

◎ 자체심의 의결현황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보도금지	광 고 제 한	외 부 기 고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일간지	중 앙	3	1	1			1	1		2	
	지 역	39	14	3		5	17	11	25	3	
종합주간지		16	13				3	12	3	1	
지역주간지		25	18	1		2	4	15	9	1	
월 간 지		6	5			1		5	1		
총 계		89 100%	51 57.3%	5 5.6%	0 0.0%	8 9.0%	25 28.1%	44 49.4%	38 42.7%	7 7.9%	0 0.0%

자체심의와는 별도로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후보 등 피해당사자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나 시정심의를 요구한 시정요구심의는 모두 11건으로, 중앙일간지 4건, 지역일간지 3건, 지역주간지 2건, 그리고 인터넷신문 2건이었다. 이 같은 건수는 지난 16대 총선 때의 4건, 17대 총선 때의 9건보다 다소 증가한 것이다. 반론보도청구회부심의를 청구한 사례는 1건 있었다.

선심위는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회부 접수 시 안전심의에 앞서 시정요구인(청구인)과 피시정요구인(피청구인)의 진술을 들은 후 안전을 심의, 결정을 내리는 절차를 거치는데, 11건의 시정요구 신청을 심의한 결과 사과문 게재 1건, 정정보도문 게재 1건, 경고문 게재 1건, 경고 2건, 권고 1건, 기각 2건, 각하 2건의 결정을 내렸으며 심의 전 취하가 1건으로 집계됐다. 반론보도청구회부 1건은 취하되었다.

선심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모두 6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용(결정취소)이 1건, 일부인용이 2건, 기각이 3건이었다.

◎ 시정요구심의 처리현황

구 분		계	시정요구사항				처 리 결 과							
			정정 보도 등	사과문 게재	사과문 및 정정보도	경고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결정	사과문 게재결정	경고문 게재결정	경 고 결 정	권 고 결 정	기 각 결 정	각 하 결 정	취 하
일간지	중 앙	4	2	1	1		1	1			1	1		
	지 역	3	3						1	1		1		
지역주간지		2	1			1				1				1
인터넷신문		2	2										2	
총 계		11 100%	8 72.7%	1 9.1%	1 9.1%	1 9.1%	1 9.1%	1 9.1%	1 9.1%	2 18.2%	1 9.1%	2 18.2%	2 18.2%	1 9.1%

1. 경고문 게재

선심위는 이번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모두 45건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지 1건, 지역일간지 12건, 종합주간지 12건, 지역주간지 15건, 월간지 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일간지 가운데 1건은 시정요구심의에 따른 것이다.

위반유형별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부기고 위반 4건, 여론조사보도요건 미비 3건, 광고제한 위반이 1건이었다.

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조 '공정성' 및 제2조 '형평성'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였다.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이번 심의를 통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은 위반기사 가운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은 37건이었다.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 9	경향신문	2008. 1. 17.	W1~W2	노무현 원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2008자심10	성주자치신문	2008. 1. 3.	5	-떠오른 M&A 강자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2008. 1. 15.	3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출판기념회
2008자심13	월요신문	2008. 1. 20.	54~55	'희생과 나락' 국운 건 모험, 대운하 견인차
2008자심15	주간현대	2008. 1. 20.	36~37, 39	"이 남자의 변신은 무죄"
2008자심16	주간현대	2008. 1. 20.	76~77	"참여정부 아마추어 아니다! 노무현家 후예 의리 지키겠다"
2008자심17	뉴스인	2008. 1. 21.	3	고경화 국회의원 강서를 총선 출마 공식 선언 MB 복지정책 핵심 브레인... 보건복지 전문가 '정평'
2008자심19	상주신문	2008. 1. 21.	5	자수성가한 CEO, 이젠 고향서 '지역봉사'
2008자심27	아림신문	2008. 1. 18.	8	-특별대담-강호양 이명박 대통령 선대위 직능 특별위원장
		2008. 1. 25.	12	-이 사진의 의미는?
2008자심28	부안저널	2008. 1. 23.	5	내가 본 김춘진 의원
2008자심29	종로신문	2008. 1. 23.	5	이명박 새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꼭 만들터
2008자심30	남도일보	2008. 1. 24.	5	"4월 총선때 호남도 유능한 인재 뽑아야"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31	남도일보	2008. 2. 1.	5	"애포문화도시조성 끝까지 책임지겠다"
2008자심40	월요신문	2008. 2. 3.	54~55	"글로벌 시대, 의원 외교가 선진국 가는 지름길"
2008자심43	성주신문	2008. 2. 5.~11.	8	"하늘이 제게 준 최대의 축복, 그것은 '고향'입니다"
2008자심44	부안저널	2008. 2. 6.	4	- [의원동정] 김춘진 의원 / 김춘진 국회의원 초청 업무설명회
			6	-(특별기고)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되어야...
2008자심49	민주신문	2008. 2. 10.	54~55	박근혜 좌장이란 원죄가 '죄라면 죄'
2008자심53	중앙SUNDAY	2008. 2. 10.	2	"귀족 이미지라니? 배우 아들이 무슨..."
2008자심54	나주투데이	2008. 1. 21.	2	-최인기 의원, 영산강 운하 고대문화권개발과 결합돼야 이명박 당선자 만나 복합프로젝트로 조기추진 건의
		2008. 1. 28.	1	-최인기 의원, 공기업 민영화 중단 강력건의
		2008. 2. 4.	1	-최인기 의원 국회 원내대표 연설
2008자심60	호남일보	2008. 2. 18.	3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겁니다"
2008자심61	호남일보	2008. 2. 20.	3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2008자심63	주간현대	2008. 3. 2.	76~77	"대한민국 건강하게 살리는 데 모든 것 바치겠다"
2008자심64	레이디경향	2008. 3월호	228~231	「7막 7장」 홍정욱의 이유 있는 도전
2008자심65	여성동아	2008. 3월호	396~399	홍정욱 첫 프라이버시 인터뷰
2008자심66	우먼센스	2008. 3월호	370~373	CEO 그만두고 정치에 뛰어든 홍정욱의 인생 '7막8장'
2008자심67	주부생활	2008. 3월호	310~317	천재라 불리는 남자 고승덕
2008자심71	뉴스사이즈	2008. 3. 3.	28~29	"공공 디자인 내실 갖춘 사업돼야"
2008자심72	뉴스메이커	2008. 3. 4.	14~19	새로운 진보 꿈꾸는 심상정 의원
2008자심73	부안저널	2008. 2. 20.	3	-김춘진 의원 "의정활동 잘 했다"
			4	-의원동정
2008자심74	부안저널	2008. 3. 5.	8	의원동정
2008자심78	영광21	2008. 3. 6.	4~5	이낙연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2008자심79	영주신문	2008. 3. 12.~20.	6	권영창 전 영주시장 국회의원 무소속출마 선언
2008자심83	뉴스메이커	2008. 3. 25.	16~21	지역구 배지 도전 전여옥 의원
2008자심84	금천뉴스	2008. 3. 17.	A8	"금천구를 첨단, 문화, 교육, 복지도시로 바꾸겠다"
2008자심86	주간현대	2008. 3. 23.	10~11	"북한 국기 인정한 정몽준...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
2008자심89	수도권일보	2008. 4. 1.	13	18대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2008자심90	월간 말	2008. 4월호	84~87	전 조선일보 기자, 새로운 도전에 나서다
2008시심 2	경남일보	2008. 2. 25.	13	이젠 관광사천으로 新성장동력 만들 터

나. 외부기고 위반

외부기고 제한 위반 결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1조 '외부기고 등' 규정을 어긴 기사들에게 내려졌다. 이 부분의 위반

은 지난 17대 총선 이래 대부분 경고결정을 받았다.

이번 18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에서는 후보나 후보예정자 명의의 칼럼을 게재해 위반한 기사가 3건, 특정 후보의 저술을 연재한 기사 1건 등 모두 4건의 기사가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6	월요신문	2008. 1. 13.	32~33	옥중투쟁위원회 위상 따라 교도소에도 '민주화 바람'
2008자심32	시민일보	2008. 1. 25.	5	-태안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다
		2008. 1. 30.	5	- '창조적 실용주의' 원칙으로
2008자심33	시민일보	2008. 1. 31.	5	이명박 인수위를 보며
2008자심34	전북도민일보	2008. 1. 25.	13	농촌진흥청 폐지 재고 되어야

다.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여론조사관련 위반결정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및 선거기사심의기준 제8조 '여론조사 보도' 규정에 따라 심의하였다. 이 법령과 규정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결과 보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론조사 보도금지 기간이 아닌 때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 의뢰자, 조사기관,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오차율 등 여론조사 보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권자들로 하여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이 규정을 어겨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은 기사는 3건이었다.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68	경상매일신문	2008. 2. 20.	1	포항북구 공천경쟁 뜨겁다
2008자심87	중부신문	2008. 3. 26.	1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2008자심88	경북도민일보	2008. 3. 31.	1	-한. '친박연대-무소속' 朴風에 오차범위 접전
			2	-여성장군 이재순 對 현역의원 김태환 양강 구도

라. 광고제한 위반

광고제한 위반결정은 공직선거법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부분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6조 '의견광고' 및 제17조 '상업광고의 제한' 부분을 근거로 심의하였다. 이 조항들은 선거 관련 일정기간 동안 언론사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는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한 지역일간지가 이를 위반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80	아시아일보	2008. 3. 19.	1	〈알려 드립니다〉

2. 경 고

경고 결정은 자체심의 위반건수 89건 가운데 42.7%인 38건이 내려졌으며, 시정요구심의에서 2건 내려졌다. 매체별로는 중앙일간지는 없었고 지역일간지가 26건, 종합주간지가 3건, 지역주간지가 10건, 월간지가 1건이었다. 중앙일간지에 비해 지역신문들에 경고 결정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번 총선 역시 지역정서가 변수로 작용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지역신문들이 해당지역을 바탕으로 지역정서에 부합하는 정당후보를 부각시켜 보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자체심의에서 위반건수가 두드러지는 신문은 서울지역 일간지인 시민일보로 경고 결정 2건을 비롯해 2건의 경고문 게재 결정도 받았다.

경고 결정을 위반유형별로 보면 외부기고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4건, 광고제한 위반 6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1건으로 집계됐다.

○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12	월요신문	2008. 1. 20.	5	이명박 정부 날개를 달고 힘차게 비상할 것
2008자심18	상주신문	2008. 1. 21.	2	변화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상주
2008자심20	서남일보	2008. 1. 21.	3	한국전쟁의 상처를 세계평화로 승화 시켜나가자
2008자심21	시민일보	2008. 1. 21.	5	통일부 폐지 논란
2008자심22	전북도민일보	2008. 1. 21.	15	서부신시가지내 무리한 공공기관 이전 중단돼야
2008자심23	전라일보	2008. 1. 22.	15	농진청 폐지, 좌시할 수 없다
2008자심26	강원도민일보	2008. 1. 24.	19	정명 '강릉부' 700주년
2008자심36	아시아투데이	2008. 1. 28.	31	지식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려면...
2008자심37	우리일보	2008. 1. 30.	4	'시화복합비즈니스센터'로 시화공단 활로 개척하자!
2008자심38	인천신문	2008. 1. 30.	18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통과 환영
2008자심39	일간투데이	2008. 1. 30.	15	재정·공공운용시스템 혁신, 완료형 아닌 진행형
2008자심42	강원일보	2008. 1. 22.	7	동해안 발전을 위한 제언
2008자심45	새전북신문	2008. 2. 6.	12	설을 맞이하며
2008자심56	중도일보	2008. 2. 18.	7	세종시 그리고李 당선인
2008자심57	시사저널	2008. 2. 26.	44~45	구멍 뚫린 법 위로 송례문 불길 솟아올랐다
2008자심62	충남일보	2008. 2. 25.	19	'송례문지묘(崇禮門之墓)'를 만들자
2008자심76	남해신문	2008. 3. 7.	21	세 가지 품성(品性)
2008자심77	영암신문	2008. 2. 22.	2	故 차일혁 총경이 그립다
2008자심85	담양주간신문	2008. 3. 17.	8	사교육비 20조시대 근본적인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1	울산매일	2007. 12. 21. 2007. 12. 24.	3 3	-당권경쟁 '다크호스' ...최고위원 물망 -국회의원 헌신적 표발같이 성과
2008자심3	주간현대	2007. 12. 30.	76~77	"여야 정쟁 이제 그만! 한국건설 동반자 돼야"
2008자심4	중부일보	2008. 1. 8.	25	"양평지역 각종 규제풀어 친환경 명품신도시 만들어야"
2008자심8	충청일보	2008. 1. 16.	18	"지역발전 인적네트워크 활용하길"
2008자심50	괴산증평신문	2008. 2. 4.~11.	4	김종률 의원 우리지역 관련 의정보고
2008자심51	예산신문	2008. 2. 4.	1~2 2	-홍문표 국회의원 인터뷰 -"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쌀 목표가격 5년 동결안 농해위 통과"
2008자심52	익산신문	2008. 2. 4.	11	"도민의 힘모아 창조와 도약의 전복만들자"
2008자심55	경동신문	2008. 2. 16.	8 8	- "현장정치·실용정치 펼치겠습니다" -"행정전문가 강점으로 광진발전 이룰터"
2008자심59	전남일보	2008. 2. 25.	5	정가 브리핑
2008자심69	광주매일신문	2008. 3. 1. 2008. 3. 3. 2008. 3. 4. 2008. 3. 5.	3 4 4 4	4·9 총선마당
2008자심70	전북일보	2008. 3. 3. 2008. 3. 4. 2008. 3. 5.	4 4 4	선택 4·9 총선현장
2008자심75	호남매일	2008. 3. 7.	3	4·9총선 주자 인터뷰
2008시심5	시민일보	2008. 3. 14.	4	김희선,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
2008시심10	당진시대	2007. 12. 31. 2007. 12. 31. 2008. 3. 10. 2008. 3. 10. 2008. 3. 10. 2008. 3. 17. 2008. 3. 31. 2008. 3. 31. 2008. 3. 31.	1 2 1 1 11 4 1 2 2	-정덕구 전 장관 저서 출판기념회 연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경제지도를 바꿀 당진의 대역사 -한나라당,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공천 -당진의 20~30대가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거 -정덕구 후보지지 당원들 인명진 윤리위원장에게 공식 항의 -김낙성 의원 자유선진당 공천 확정 -김낙성 후보 선거사무장 고발 -"김 후보 참석은 우연이었다" -300만원 이상 벌금형, 당선무효

◎ 광고제한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11	성주신문	2008. 1. 15.~21.	12	주진우, 경제서적 출간
2008자심41	경북일보	2008. 2. 4.	18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2008자심46	경북매일	2008. 2. 4.	3	
2008자심47	매일신문	2008. 2. 4. 2008. 2. 5.	20 34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48	영남일보	2008. 2. 4. 2008. 2. 6.	26 5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2008자심58	월간중앙	2008. 3월호	144~145 사이(내지)	바로 그책! 한국의 전 언론은 허준영의 〈폴리스 스토리〉 출간을 기다렸다!

⊙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82	충청투데이	2008. 3. 20.	1 3 4	-심규철 · 이웅희 4.2%P 오차범위 접전 -선진당 바람 불까 안불까? 변수로 -부동층 증가 '충청표심 떠돈다'

3. 주의

자체심의 위반건수 89건 가운데 7.9%인 7건에 대해 주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재결정 내용 가운데 가장 적은 양이다.

매체별로 보면 중앙일간지 2건, 지역일간지 3건, 종합주간지 1건, 지역주간지 1건이었다.

주의 결정을 받은 7건의 기사를 위반유형별로 보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3건, 외부기고 위반이 2건, 광고제한 위반과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각각 1건씩이었다.

⊙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2	울산제일일보	2007. 12. 28.	2 2	-행자부로부터 예산 6억 확보 -공사비 20억 신규 반영 최종 합의
2008자심7	경기신문	2008. 1. 16.	3	"임기내 차질없이 공사 진행"
2008자심14	오마이뉴스	2008. 1. 18.~24.	11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다?

⊙ 외부기고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5	무등일보	2008. 1. 10.	19	일본 관련 호남박물관, 필수시대다
2008자심24	한겨레	2008. 1. 22.	33	'정권 인수위' 지 '인수위 정권' 아냐

◎ 광고제한 위반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25	경산자치신문	2008. 1. 23.	1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경산·청도지회 광고

◎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의결번호	매 체 명	보도일자	게재면	제 목
2008자심81	내일신문	2008. 3. 20.	3	천정배 41.5% - 허승 22.2%

4. 사과문 게재

사과문 게재 결정은 1건으로 시정요구 심의에서 내려졌다. 이 결정은 세계일보가 3월 3일자에서 “낙천 명단 윤곽… 호남의원 ‘발각’” 제하로 통합민주당의 호남지역 공천과 관련해 당의 ‘호남지역의원 평가 자료’를 근거로 김태홍 후보예정자의 낙천을 기정사실화하는 기사를 게재한 데 대해 김 후보예정자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선심위는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및 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호남의원 공천과 관련한 공식 평가자료를 발표한 적이 없음은 물론, 그 자료작성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도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인의 낙천’을 시사하는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시정요구인의 공천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과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5. 정정보도문 게재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은 1건으로 역시 시정요구 심의에서 내려졌다. 한국일보는 4월 2일 “열전지 이곳-인천 남동을/조전혁·이원복 혼전속 이호웅 ‘막판 역전’” 제하로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 지역의 판세를 분석하면서 시정요구인인 배진교 후보예정자를 배제한 채 다른 여타 후보예정자들의 경쟁상황을 다룬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인 배진교 후보예정자는 이 보도가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있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선심위는 이와 관련, 주요 언론사들의 여론조사가 시정요구인인 배진교 후보예정자가 다른 후보예정자들과의 경합에서 접전 내지 우세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함으로써 해당지역 유권자들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문 게재를 결정했다.

6. 권 고

권고 결정도 마찬가지로 시정요구심의에서 1건 내려졌다. 동아일보는 3월 24일자 A1면 “본보-MBC, 관심지역 2차 15곳 여론조사” 및 A6면 “(경북-경남) 무소속 이인기 10.4%P차 1위… 최구식 오차범위 내 선두” 제하의 기사에서 경남 진주 갑선거구를 비롯한 ‘관심지역’의 후보별 지지도를 보도했다.

이에 대해 시정요구인은 위 보도내용 중 경남 진주갑 지역의 여론조사가 자신을 제외하고 대신 타 지역 선거구 예비후보를 포함하여 이뤄져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으며, 이 조사의 보도로 인해 지역에서 큰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선심위에 정정보도 등을 구하는 시정을 요구했다.

선심위는 피시정요구인인 동아일보가 시정요구인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의도 없이 착오에 의한 단순한 실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론조사의 오류를 알고 동일자 후속판부터 해당 기사를 수정한 점, 4월 2일자 A6면과 4월 4일자 A10면, A12면을 통해 시정요구인을 포함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하위조치인 권고 결정을 내렸다.

제18대 총선 선거기사 자체심의 대상매체는 일간, 주간, 월간으로 대별해 총 398개로 일간지 109개(중앙지 26, 지방지 82), 종합주간지 22개, 지역주간지 254개, 종합월간지 7개, 여성월간지 5개, 뉴스통신 2개였다.

이 가운데 중앙일간지 3개, 지역일간지 34개, 종합주간지 8개, 지역주간지 20개, 월간지 6개 등 모두 71개 매체가 선거기사 심의기간 중 최소 1건 이상 지적돼 주의, 경고,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심의대상 대비 위반매체 비율은 17.8%로,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의 8.9%보다 훨씬 높았다.

중앙일간지는 자체심의대상 26개 매체 가운데 3개가 지적돼 경고문 게재 1건, 주의 2건의 결정을 받았다. 매체대비 위반비율은 11.5%였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외부기고 위반이 각각 1건씩이었다.

지역일간지는 심의대상 82개 가운데 34개 매체에서 39건이 지적되어 경고 25건, 경고문 게재 11건, 주의 3건을 받았는데, 매체대비 위반비율은 41.5%였다. 위반유형은 외부기고 17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4건, 광고제한 위반 5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3건의 순이었다.

22개 매체 중 8개 매체가 지적돼 36.4%의 위반비율을 나타낸 종합주간지는 16건을 위반해 경고문 게재 12건, 경고 3건, 주의 1건의 결정을 받았다. 위반유형은 외부기고 위반이 3건이었고 나머지 13건은 모두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다.

지역주간지는 심의대상 254개 매체 중 20개 매체에서 25건이 지적되어 경고문 게재 15건, 경고 9건, 주의 1건의 결정을 각각 받았다. 매체대비 위반비율은 7.9%였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8건, 외부기고 위반이 4건, 광고제한 위반 2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건이었다.

여성잡지를 포함한 월간지는 심의대상 12개 매체 중 6개 매체에서 6건이 지적되어(50.0%) 경고문 게재 5건, 경고 1건을 받았는데,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5건, 광고제한 위반이 1건이었다.

심의대상 전 매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매체는 종합주간지인 주간현대로 모두 5건이 지적돼 경고문 게재 4건과 경고 1건의 결정을 받았다. 이어 종합주간지인 월요신문과 전북지역의 지역주간지인 부안저널이 각 4건씩 지적되어 월요신문은 3건의 경고문 게재와 1건의 경고 결정을, 부안저널은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 매체별 위반현황(자체심의)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보도금지	광 고 제 한	외 부 기 고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중앙일간지	경향신문	1	1				1			
	내일신문	1		1					1	
	한겨레	1				1			1	
	소 계	3	1	1	0	0	1	0	2	0
지역간지	강원도민일보	1				1		1		
	강원일보	1				1		1		
	경기신문	1	1						1	
	경북도민일보	1		1			1			
	경북매일	1			1			1		
	경북일보	1			1			1		
	경상매일	1		1			1			
	광주매일신문	1	1					1		
	남도일보	2	2				2			
	매일신문	1			1			1		
	무등일보	1				1			1	
	새전북신문	1				1		1		
	수도권일보	1	1				1			
	시민일보	3				3	2	1		
	아시아일보	1			1		1			
	아시아투데이	1				1		1		
	아침신문(구 서남일보)	1				1		1		
	영남일보	1				1		1		
	우리일보	1					1		1	
	울산매일	1	1					1		
	울산제일일보	1	1						1	
	인천신문	1					1		1	
	일간투데이	1					1		1	
	전남일보	1	1						1	
	전라일보	1					1		1	
	전북도민일보	2					2	1	1	
	전북일보	1	1						1	
	중도일보	1					1		1	
	중부일보	1	1						1	
	충남일보	1					1		1	
	충청일보	1	1						1	
	충청투데이	1		1					1	
	호남매일	1	1						1	
	호남일보	2	2					2		
	소 계	39	14	3	0	5	17	11	25	3
종합주간지	뉴스메이커	2	2				2			
	뉴스사이즈	1	1				1			
	민주신문	1	1				1			
	시사저널	1				1		1		

구 분		계	위 반 유 형					결 정 내 용			
			공정성 및 형평성	여론조사 보도요건	여론조사 결과보도금지	광 고 제 한	외 부 기 고	경고문 게재	경 고	주 의	권 고
종합주간지	오마이뉴스	1	1							1	
	월요신문	4	2				2	3	1		
	주간현대	5	5					4	1		
	중앙SUNDAY	1	1					1			
	소 계	16	13	0	0	0	3	12	3	1	0
지역간지	경동신문	1	1						1		
	경산자치신문	1				1				1	
	괴산증평신문	1	1						1		
	금천뉴스	1	1					1			
	나주투데이	1	1					1			
	남해신문	1					1		1		
	뉴스인	1	1					1			
	담양주간신문	1					1		1		
	부안저널	4	4					4			
	상주신문	2	1			1		1	1		
	성주신문	2	1			1		1	1		
	성주자치신문	1	1					1			
	아림신문	1	1					1			
	영광21	1	1					1			
	영암신문	1					1		1		
	영주신문	1	1					1			
	예산신문	1	1						1		
	익산신문	1	1						1		
	종로신문	1	1					1			
	중부신문	1		1				1			
	소 계	25	18	1	0	2	4	15	9	1	0
월간지	레이디경향	1	1					1			
	여성동아	1	1					1			
	우먼센스	1	1					1			
	월간말	1	1					1			
	월간중앙	1				1			1		
	주부생활	1	1					1			
	소 계	6	5	0	0	1	0	5	1	0	0
총 계		89 100.0%	51 57.3%	5 5.6%	0 0.0%	8 9.0%	25 28.1%	44 49.4%	38 42.7%	7 7.9%	0 0.0%

1. 중앙일간지

중앙일간지는 종합일간지 3개 매체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관련보도로 1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1건, 외부기고 위반으로 1건씩이 지적되어 경고문 게재 1건 및 주의 결정 2건을 받았다.

경향신문은 1월 17일자 특집 면에서 “노무현 원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제하로 안희정 후보예정자와의 기획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안 후보예정자의 정치역정, 총선출마 등과 같은 향후 계획, 포부 등을 그의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집중 보도, 특정 후보예정자를 과다하게 부각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한겨레는 1월 22일자 33면에 “‘정권 인수위’지 ‘인수위 정권’ 아냐” 제하로, 대통령 인수위의 정책을 비판하는 통합민주당 채수찬 의원의 기명칼럼을 게재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의 기명칼럼 게재를 금하고 있는 선거기사심의기준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내일신문은 3월 20일자 3면에 “천정배 41.5% - 허승 22.2%” 제하로, 경기 안산 단원갑 지역구의 각 후보별 지지율 및 정당별 지지도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를 등 공직선거법과 선거기사심의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빠뜨린 채 보도한 것이 지적돼 주의 결정을 받았다.

2. 지역일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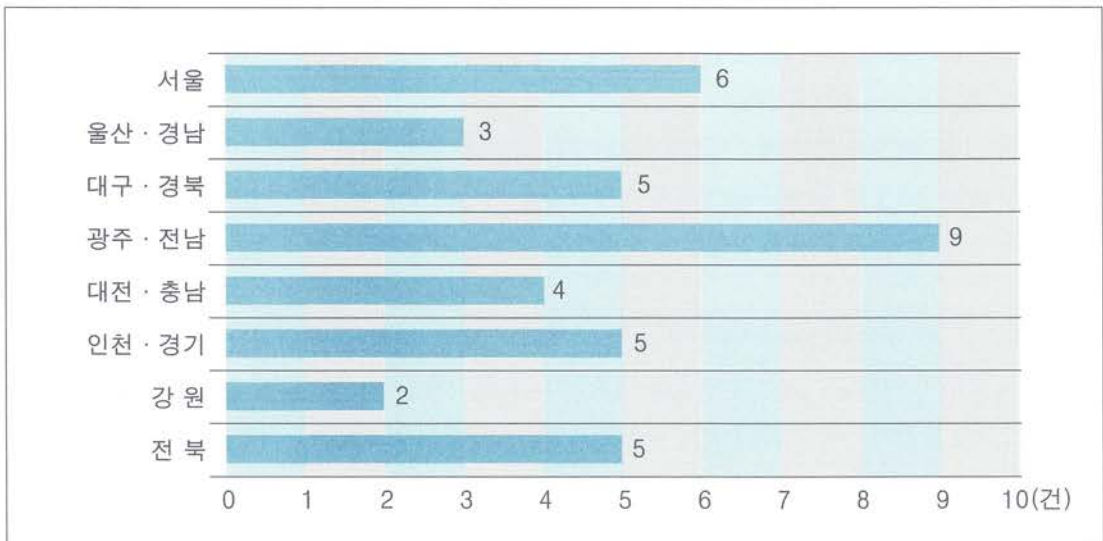
지역일간지는 82개 심의대상 매체 중 41.5%인 34개 매체에서 39건을 위반했는데, 외부기고 위반이 17건(43.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14건(35.9%), 광고제한 위반 5건(12.8%),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 3건(7.7%)순이었다. 이 같은 위반사례 및 매체에 대해 선심위가 내린 결정은 경고 25건(64.1%), 경고문 게재 11건(28.2%), 주의 3건(7.7%)이었다.

지역일간지 중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매체는 서울지역 일간지인 시민일보로, 모두 외부기고 위반이었다. 시민일보는 1월 25일 및 1월 30일자 각 5면에 동일인인 특정 정당 특정 예비후보의 기명칼럼을 2회에 걸쳐 연속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1월 21일자에서도 5면에 역시 특정 정당 특정 예비후보의 기명칼럼을 게재해 주의결정을 받았다. 시민일보는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선거기사심의에서도 지역일간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6건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공정성 및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일간지들의 위반유형은 전반적으로 특정 후보를 박스기사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부각시킨다거나 기명칼럼 게재를 통해 특정 후보를 부각시킨 경우가 많았다. 지난 17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상대 후보를 폄하하거나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보도는 드물었다.

지역일간지들의 지역별 위반건수를 보면 광주·전남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6건, 인천·경기와 대구·경북, 전북지역이 각 5건, 그리고 대전·충남이 4건, 울산·경남이 3건, 강원지역 2건이었다.

㉠ 발간지역별 위반현황



지역일간지의 위반내용 중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남도일보(2월 1일자 5면)에 특정 지역에 출마예정인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현안과 관련한 후보예정자의 공약사항과 총선 출마의지, 의정활동 계획 등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이 신문은 인터뷰기사와는 별도로 “강력한 리더십·‘행정의 달인’ 평가”라는 별도의 박스기사로 이 후보예정자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해 선심위로부터 후보예정자를 과도하게 부각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호남일보(2월 18일자 3면)에 “모두가 행복한 복구 만들겁니다” 제하로, 특정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예정자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인터뷰기사와 별도의 소개 박스 기사를 게재한 것이 지적돼 역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경북일보(2월 4일자 18면)에 특정 지역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예정자의 저술(‘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을 선전하는 광고 기사를 게재, 상업광고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돼 경고 결정을 받았다. 경북일보와 함께 같은 지역의 경북매일, 매일신문, 영남일보도 같은 광고 기사를 게재해 모두 경고 결정을 받았다. 광고제한과 관련해 서울지역에서 발간되는 아시아일보도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이 신문은 3월 19일자 1면에 특정 지역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예정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제하의 광고형태 안내문을 게재, 광고제한 위반이란 지적과 함께 역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경북지역 일간지인 경상매일신문은 2월 20일자 1면에 “포항복구 공천경쟁 뜨겁다” 제하로 특정 정당 이 공천자료로 삼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보도하면서 조사

기관,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밝히지 않아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3. 종합주간지

종합주간지는 심의대상 22개 매체 중 8개 매체가 16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3건, 외부기고 위반이 3건이었다. 이들 위반사례에 대해 선심위는 경고문 게재 12건, 경고 3건, 주의 1건의 결정을 내렸다. 이들 주간지는 대부분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키는 기획기사나 인터뷰 기사를 주간지 특성을 살려 여러 면에 걸쳐 게재한 것이 특징이었다. 특정 후보를 폄하하거나 비방성의 기사게재로 지적을 받은 경우도 1건 있었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월요신문은 1월 20일자에서 “‘희생과 나락’ 국운 건 모험, 대운하 건인차” 제하로 총선출마 예비후보인 한나라당 ‘한반도대운하추진위’ 공동위원장의 정치활동 경력, 정치적 소신, 향후 활동계획 등을 그의 인물사진과 함께 2개면에 걸쳐 보도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월요신문은 이밖에도 1월 13일자와 1월 20일자에 총선출마 후보예정자의 기명칼럼을 게재하는 한편 2월 3일자에는 특정 정당 특정 예비후보를 부각시키는 기획 기사를 게재해 각각 경고문 게재와 경고 결정을 받았다.

주간현대는 1월 20일자에서 “이 남자의 변신은 무죄” 제하로 인천 부평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예정자를 3개면에 걸쳐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중앙일보에서 발간하는 중앙SUNDAY는 2월 10일자 2면에 서울 노원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특정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경력과 인생역정, 총선출마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라는 지적으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4. 지역주간지

지역주간지의 경우 심의대상 254개 매체 중 20개 매체에서 모두 25건이 지적되었는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18건, 외부기고 위반이 4건, 광고제한 위반이 2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1건이었다. 선심위는 이들 위반사례들에 대해 경고문 게재 15건, 경고 9건, 주의 1건씩의 결정을 각각 내렸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개 매체에서 5건이 지적되어 가장 많았고, 서울과 경북 각각 4건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지적된 매체는 전북 부안에서 발간되는 부안저널로, 4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해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부안저널은 1월 23일자 5면에 편집인이 “내가 본 김춘진 의원” 제하로 직접 쓴, 지역 현역의원이자 18대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후보예정자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기사를 전면에 걸쳐 게재했다. 이어 2월 6

일과 2월 20일, 3월 5일자에서도 같은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키는 기사들을 게재해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서울지역 주간지인 종로신문은 1월 23일자 5면에 “이명박 새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꼭 만들어” 제하로, 종로지역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특정 후보를 거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지적과 함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5. 월간지

월간지는 여성잡지를 포함해 모두 12개의 심의대상 매체 중 6개의 매체에서 6건이 지적됐다. 광고제한 위반 1건을 빼고 나머지 모두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었다. 이들 위반사례들 중 5건에 대해서는 경고문 게재 결정을, 1건에 대해서는 경고 결정이 내려졌다.

위반사례들은 유형상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킬 목적으로 후보예정자의 경력이나 인생관, 정치적 소신과 향후 포부 등을 다룬 특집기사가 대부분이었다.

레이디경향과 여성동아, 우먼센스, 주부생활은 각각 3월호에서 서울 노원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특정 예비후보를 소개하는 기사를 동시에 게재,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월간 말은 4월호에서 역시 서울지역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특정 예비후보를 다룬 특집 기사를 게재,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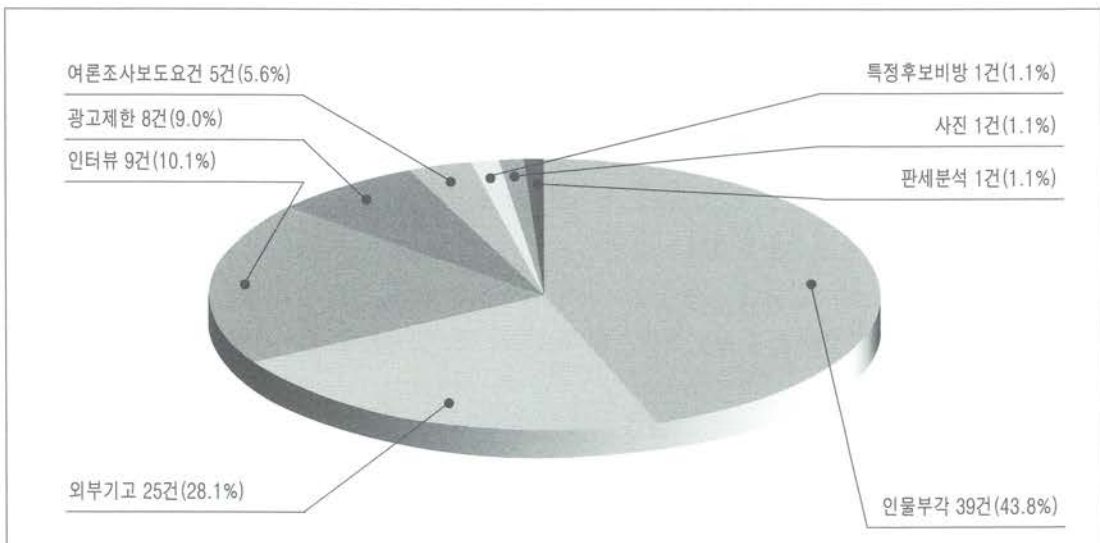
제4장 위반유형별 분석

선심위가 이번 총선기간 선거기사 자체심의에 있어 제재조치를 내린 대상은 제목과 내용, 사진 등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후보를 부각시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들이었다.

그리고 여론조사의 보도요건을 미비한 기사 및 이를 통해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등의 여론조사관련 기사와 선거일 전 90일부터 게재가 금지되는 후보예정자 및 예비후보의 칼럼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역시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의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의 광고게재도 그 대상이었다. 이들 위반기사들 가운데 의도성이 높고 정도가 심한 것은 경고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어 경고와 주의 순의 결정을 내렸다.

자체심의한 선거관련 기사의 위반사례를 이 같은 위반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총 위반건수 89건 가운데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의 기사내용이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부기고 위반이 25건, 광고제한 위반이 8건, 여론조사 보도요건 미비가 5건이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기사들을 보도유형별로 세분하면 인물부각이 39건, 인물부각과 다소 겹쳐지는 인터뷰가 9건, 판세분석, 특정후보 비방, 사진 각 1건이었다.

⊙ 위반유형별 분포도



1. 공정성 및 형평성

가. 인물 부각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기사심의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된 기사는 인물평을 중심으로 한 특정 후보예정자나 후보자에 관한 것들이다. 이 기사들은 대부분 게재의 객관적 기준이나 특별한 계기도 없이 대상자들을 우호적으로 부각시켜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키 위한 의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정도가 심한 언론사의 경우 한 특정 인물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각가지 보도유형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한 사례도 있었다.

인물부각기사로 지적을 받은 언론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와 주간지들이었다. 다수 월간지들도 포함됐다. 중앙일간지 가운데서는 경향신문이 유일하게 인물부각 기사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은 1월 17일자 특집 면에서 “노무현 원팔 안희정 ‘민주개혁시대는 죽었다’” 제하로, 특정 지역 출마 후보예정자의 정치적 역경과 현안에 대한 입장, 향후 포부 등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 공정성 및 형평성을 저해했다는 심의결과에 따라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지역주간지인 부안저널은 지역 현역의원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특정 정당 예비후보를 4차례에 걸쳐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해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이 신문은 1월 23일자에서 “내가 본 김춘진의 원” 제하로 유레가 드문 편집인 명의의 기명기고문을 전면에 게재해 이 후보를 부각시켰다. 이 기사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이 신문은 2월 6일자와 2월 20일, 3월 5일자 등 3회에 걸쳐 이 후보의 의정활동과 동정을 알리는 기사를 실어 각 건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지역신문들이 합세해 특정 후보예정자를 부각시킨 사례도 있다. 경북 성주의 주간지인 성주자치신문과 성주신문은 특정 정당 후보예정자를 여러 각도에서 부각시키는 기사를 게재해 각각 경고문 게재와 경고 결정을 받았다. 성주자치신문은 총선 후보예정자인 주진우 사조그룹회장을 소개하는 기사와 주 회장의 저술출판기념회 관련 기사를 1월 3일과 15일자에 각각 게재했다. 성주신문은 주 회장의 저술을 광고하는 기사를 게재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성주신문은 이어 2월 5일자에도 주 회장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나주투데이는 1월 21일, 1월 28일, 2월 4일자에 각각 지역 현역의원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최인기 예비 후보의 의정활동과 공약사항 등을 우호적으로 부각시키는 기사를 3회에 걸쳐 사진과 함께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전남 영광에서 발간되는 지역주간지인 영광 21은 지역 현역의원으로 총선에 출마하는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2개 면에 걸쳐 특집기사형태로 소개하는 기사를 실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신문은 “이낙연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표” 제하로 이 의원의 의정활동과 실적, 정치적 역경과 경력, 정치적 소

신 등을 소개했다.

여성월간지도 편파적인 인물부각기사로 강한 지적을 받았다. 이 잡지들은 모두가 한 특정 후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도성이 다분한 것으로 심의돼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레이디경향, 여성동아, 우먼센스는 3월호에서 서울 노원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홍정욱 후보를 부각시키는 기사와 인터뷰 기사를 동시에 게재했다. 이 잡지들은 각각 4개 면에 걸쳐 홍 후보의 출생 및 성장배경과 인생역정, 정치적 소신 등을 여러 장의 사진들과 함께 실어 경쟁상대후보와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를 심대하게 야기시켰다는 게 선심위의 판단이었다. 중앙일보에서 발간하는 중앙SUNDAY도 2월 10일자에서 홍 후보의 정치입문과 관련한 기사를 실어 역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월간지 가운데 월간 말은 4월호에서 서울 중랑구 을 지역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진성호 후보를 소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로 월간 말 역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나. 인터뷰

인터뷰기사는 특정 인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한 수단이다. 따라서 인물부각기사와 겹쳐지는 기사다. 앞서 지적한 여성월간지들의 홍정욱 후보 부각기사에도 인터뷰기사가 물론 있다. 이 잡지들은 홍 후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성장배경과 유학시절담, 정치입문 배경과 의지 등을 중점 소개했다.

이번 총선의 정당공천을 전후해 많은 매체들이 후보나 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 공약, 정치적 의지, 비전 등을 다룬 기사들을 게재했다. 개중에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모든 후보를 다루는 릴레이나 시리즈 형식을 취하기도 했으나, 특정 후보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성의 단발 인터뷰기사도 많았다. 9건 정도의 인터뷰기사가 제재를 받았는데, 대부분이 지역신문과 월간지였다.

위반사례를 보면, 광주지역 일간지인 남도일보는 2월 1일자에서 광주 서구갑지역구 출마예정인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예정자에 대해 정치부장이 인터뷰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신문은 이 후보예정자가 대통령직인수위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 위원장인 점을 들어 지역의 당면현안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포함한 의정활동계획과 출마의 변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서울지역 주간지인 종로신문은 1월 23일자에서 지역 현역의원으로서 총선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박진 예비후보를 인터뷰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명박 새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꼭 만들 터”라는 제하의 이 기사는 박 예비후보의 의정활동과 대선과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지역현안과 관련한 공약사항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역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여성월간지인 주부생활은 3월호에 “천재라 불리는 남자 고승덕” 제하로, 서울 서초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고승덕 예비후보의 주요 이력과 인생관, 정치입문 배경 및 정치적 소신 등을 인터뷰형식으로 소개하는 기사를 8개면에 걸쳐 게재,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심의판정으로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다. 판세분석

총선관련 기사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과 지지율 등을 분석하는 판세분석은 유동층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선택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대개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찍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언론사들은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여론조사와 정당 자체분석, 정밀취재 등에 근거한 판세분석 보도를 해야 한다. 판세분석의 근거와 자료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부정확할 때 보도의 공정성은 크게 훼손된다.

이번 총선에서 공정성 및 형평성을 위반한 판세분석 기사로 제재결정을 받은 기사는 지역일간지 1건이었다.

경기도 수원에서 발간되는 수도권일보는 4월 1일자에서 “18대 총선 한나라당 과반의석 확보, 통합민주당 목표달성 무소속 바람” 제하로 총선 판세를 각 정당의 당명과 유력후보들의 성명풀이를 근거로 한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 선심위는 이 기사와 관련, 특정인의 주관적이고 단정적인 해석을 근거로 선거판세와 선거결과를 예단한 기사를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 및 선거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라. 비방기사

이번 총선관련 기사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상대 후보를 폄훼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보도로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지적을 받은 기사는 1건 있었다. 지난 17대 총선 때는 한 건도 없었다.

종합주간지인 주간현대는 3월 23일자에서 “북한국기 인정한 정몽준… 한나라당에서 퇴출시켜라!” 제하로,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를 과도하게 비방하는 외부기고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정 후보가 정상적인 자존심과 판단력을 갖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좌파적 성향이 있으므로 민노당이나 통합민주당으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심위는 이 기사에 대해 특정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칼럼니스트의 기고문을 여과없이 보도해 선거에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마. 사진

선거기사에서 사진의 불공정사례는 한 지면의 기사에 여러 장의 사진을 쓴다든가, 한 기사 속에 특정 후보의 사진만 쓰거나 반대로 다른 경쟁상대의 사진은 게재하면서 특정 후보의 사진만 빼버려 차별화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유력한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특정 후보 측에서 제공한 사진을 여과 없이 그대로 게재해 공정성 및 형평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다.

이번 총선관련 기사심의에서 사진보도가 불공정사례로 지적된 것은 1건이었다. 아람신문은 1월 25일자 12면에 경남 거창지역구에 출마예정인 강호양 후보예정자가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와 찍은 사진 기사를 “이 사진의 의미는?”이라는 제하로 게재했다. 이 사진기사는 강 후보예정자가 모 대학 대학원을 나왔다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당선자와의 연(緣)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 사진에는 깊은 속뜻이 있다고 측근은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선심위는 이 기사와 관련, 이 신문의 1월 18일자 강 후보예정자와의 인터뷰기사와 함께 강 후보예정자의 인물사진 등을 2회에 걸쳐 과도하게 부각 보도했다는 점을 들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내렸다.

2. 외부기고 제한

외부기고(칼럼) 제한은 지난 2004년 제17대 총선 때부터 적용된 선거기사관련 위반사항으로, 이번 18대 총선 선거기사 자체심의에서는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다음으로 많은 25건이 지적됐다. 지역일간지가 17건으로 가장 많이 나왔고 그 다음이 지역주간지 4건, 종합주간지가 3건이었으며, 중앙일간지는 한겨레 1건이었다.

외부기고 제한규정을 위반한 25건 중 20건에 대해 경고결정이 내려졌으며, 정도가 심한 1건과 경고결정을 받은 후 반복적으로 칼럼을 게재한 3건에 대해서는 경고문 게재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역 일간지인 시민일보는 1월 21일자에 대한통합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기명칼럼을 실어 경고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1월 25일과 30일자에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의 기명칼럼 2개와 1월 31일자에 대한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기명칼럼을 각각 게재해 두 건 모두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시민일보는 이들의 원들의 칼럼을 의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스크랩해 게재하는 방식을 택해 눈길을 끌었다.

전북도민일보도 1월 21일자에 대한통합민주당 채수찬 의원의 기명칼럼을 실어 경고결정을 받은 후 1월 25일자에 역시 대한통합민주당 김춘진 의원의 칼럼을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중앙일간지로는 한겨레가 1월 22일자에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책을 비난하는 대한통합민주당 채수찬 의원의 기명칼럼을 게재해 주의 결정을 받았다.

3. 광고제한

광고제한을 위반한 건수는 모두 8건으로 경고문 게재 1건, 경고 6건, 주의 1건의 결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17대 총선 때의 3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16대 총선 때는 단 1건에 불과했다.

8건 가운데 6건이 “언론사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등에 관한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과 선거기사심의기준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광고기사로, 모두가 후보 또는 후보예정자 명의로 된 저술을 광고기 위한 것이었다.

대구·경북지역의 경북일보, 경북매일, 매일신문, 영남일보는 각각 “몸을 낮추면 하늘에 닿지 않은 것이 없다” 제하의, 한나라당 포항북지역구 이병석 후보예정자의 저술광고 기사를 게재해 모두 경고 결정을 받았다.

월간중앙은 3월호에 “바로 그 책! 한국의 전 언론은 허준영의 ‘폴리스스토리’ 출간을 기다렸다” 제하로 서울 중구지역구에 출마하는 허준영 예비후보의 저술광고 기사를 게재해 역시 경고 결정을 받았다.

위반건수 8건 가운데 2건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의견 광고를 게재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들이다.

아시아일보는 3월 19일자 1면에 경기 안산 단원구를지역에 출마하는 특정정당 특정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의견 광고형태의 안내문을 게재해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4. 여론조사 보도요건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조사방법 등의 객관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선거기사심의기준과 공직선거법은 언론사의 여론조사결과 보도 시 공표준수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보도 금지기간이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로, 이전 선거법규정(선거기간)보다 줄어들어 공표가능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판세분석을 위한 여론조사결과 보도가 선거마감까지 계속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보도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번 총선 선거기사심의에 있어 이 같은 보도요건을 갖추지 않고 여론조사내용을 보도해 지적된 언론사는 모두 5개사에서 5건으로, 이 가운데 3건에 대해 경고문 게재를, 그리고 각 1건씩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결정을 내렸다. 5건 가운데 중앙일간지가 1건, 지역일간지 3건, 지역주간지 1건이었다.

내일신문은 3월 20일자 3면에 “천정배 41.5% - 허승 22.2%” 제하로, 경기 안산 단원갑지역구의 후보 및 정당별 지지율 등과 관련, 자사 명의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면서 공표준수사항인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았다.

중부신문은 3월 26일자에 “박風, 무소속 후보 ‘단비’” 제하로, 경북지역 후보별 지지도에 대한 출처불명의 여론조사결과를 인용 보도, 유권자들로 하여금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확인할 수 없게 해 잘못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선심위의 지적과 함께 경고문 게재 결정을 받았다.

충청투데이에는 3월 20일자에 “심규철·이용희 4.2%P 오차범위 접전” 제하로 충북 보은·옥천·영동지역구 후보별 지지도와 관련해 자사 명의로 실시한 여론조사내용을 보도하면서 역시 피조사자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표본오차율 등을 밝히지 않아 경고결정을 받았다.